

의안 번호	제2805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07월 08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1년 07월 08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1년 07월 21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1년 07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 개정(법률 제17769호, 2021. 1. 1. 시행)으로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체계를 김포시 시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주민세 용어 및 인용조문 변경(안 제3조)
 - (현행) 주민세 → (개정안) 개인분 주민세
 - (현행)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→ (개정안) 법 제78조
- 재산분 용어 변경(안 제4조)
 - (현행) 재산분 → (개정안) 사업소분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법」의 개정(법률 제17769호, 2021. 1. 1. 시행)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생략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8. 심사결과 : [원안가결](#)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10. 주문사항 : 없음
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